

의안검토보고

의안번호	제 5 호		
건 명	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		
제안(출)자	서초구청장	제안(출)년월일	2018. 8. 10.
검토위원명	전문위원 최형순		

I. 제안내용

1. 제안이유

-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자원봉사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.
- 이에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서초구자원봉사센터
- 소재지 : 서초구 강남대로 201(서초문화예술회관 2층)
- 시설규모 : 84.81㎡
- 인 력 : 9명 (센터장 1명, 직원 8명)

나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근거
 -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○ 위탁기간 : 3년 (2019.01.01~2021.12.31)

○ 위탁사무 :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운영

※ 현 위탁현황

시설명	위탁법인	위탁기간	연간 소요예산
서초구자원봉사센터	(사)한국자원봉사문화	2015.01.01~2018.12.31	633,465천원

3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)
-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
(센터의 조직 및 운영)
-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II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서초구에서 설치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동의를 받기위해 제출한 것으로,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,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19조 제1항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.

- 위탁사무의 내용은 “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전반”에 대한 것이며, 위탁기간은 3년으로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9조 및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7조의 “위탁사무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.”는 규정에 부합되는 등 자원봉사센터를 위탁·운영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- 현재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위탁자(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문화)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인 사업을 실시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,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다만, 위탁기관(업체, 법인)의 전문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위탁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

Ⅲ. 참고자료

- 관계법규

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자원봉사활동 기본법

제19조 (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)

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
제7조(센터의 조직 및 운영)

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. (본조개정 2007.2.9)

②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센터를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, 위탁대상기관 선정 및 기타 위탁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서초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.

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「민법」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(개정 2008. 12. 31)

④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.

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.

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.

⑦ 기타 센터의 조직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

□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(삭제 2013.05.02.)

③ 구청장이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자치사무는 서초구의회 동의하여야 한다. (신설 2011.11.1.)

④ 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한 대상사무는 그 위탁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6년마다,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마다 다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. (신설 2013.05.02.)

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다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간의 운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위탁기간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<신설 2017.11.9.>

1. 인적·물적 현황
2.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
3. 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
4.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
5. 사건·사고 현황
6. 성과평가 자료 등

제9조(협약체결)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
2. 위탁기간
3. 위탁사무 및 그 내용
4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5.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
6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